|  |  |
| --- | --- |
| DRW000006801276 | **대구파티마병원 FnU**  **EMR ID 발급 신청서** |

신규 등록  소속 변경

|  |  |  |  |  |
| --- | --- | --- | --- | --- |
| **신청자 정보** | | | | |
| 성명 |  | 역할 | CRA | Auditor |
| ID |  | | | |
| 소속기관 |  | E-mail |  | |
| 전화번호 |  | H.P |  | |

* 신청서와 함께 소속기관의 **사업자등록증**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* 한 명에게 하나의 ID만 발급되므로, 이직하실 경우 본 서식을 사용하여 소속 변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.
* ID 발급 후 3년이 경과하면 폐기됩니다.

**대구파티마병원 FnU EMR ID 발급**

**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제공 동의서**

귀하께서 제공해 주신 모든 정보는 관계법령에 의거 철저히 관리되고 있습니다.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대구파티마병원 홈페이지(http://www.fatima.or.kr)에 게시되어 있으며,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방문하실 때마다 이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**01.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**

|  |
| --- |
| 대구파티마병원 임상시험센터는 CRA, Auditor 등에게 임상연구에 등록된 시험대상자의 EMR 조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.  ▸ 필수 항목: 성명(한글), 전화번호, 핸드폰, 이메일, 소속회사정보(주소, 회사명, 사업자등록번호 등)  ▸ 자동 수집 항목: 서비스 이용기록, 접속 로그, 접속 IP 정보  ▸ 개인정보 수집방법: FnU 임상연구관리시스템 사용자 등록신청서를 담당자에게 제출 |

**위 약관에 동의 합니다.**

**02.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**

|  |
| --- |
| 대구파티마병원 임상시험센터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다음의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.  **▸ FnU 임상연구관리시스템 내에 사용자 정보 등록 및 관리(본인확인, 개인식별)**  **▸ 임상연구 과제별 연구참여자 관리 시 해당자의 개인정보 및 소속회사 정보를 사용**  **▸ 교육, 연구에 필요한 최소한의 분석 자료**  **▸ 공지 및 전달 사항 처리 시 개인 연락처 및 이메일로 내용 전달** |

**위 약관에 동의 합니다.**

**03.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**

|  |
| --- |
| 수집된 개인정보는 연구과제 진행 관리 및 연구 참여자 정보 확인, 기밀 유출 등 권리침해 분쟁 및 수사협조 등을 위하여 **3년**간 보유하며, 이 후 파기됩니다. |

**위 약관에 동의 합니다.**

※ 귀하는 위 항목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

동의 후에도 철회가 가능하며, 수집하는 개인정보는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정보로서,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에는 EMR 조회 이용에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

서명일: 년 월 일

성명: (서명)

**환자정보 보호 및 보안 서약서**

본인은 대구파티마병원에서 임상연구와 관련한 소정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환자정보 보호 및 보안을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불법 공개, 누출, 변조, 훼손하지 않음을 서약합니다.

|  |
| --- |
| **1.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환자정보를 허가된 업무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.**  **2. 대구파티마병원 EMR을 이용하면서 해당되는 연구 관련 피험자 정보 외에는 일체 접근하지 않는다. 발급 받은 접근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하고 해당 권한에서 모든 사용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.**  **3. 업무를 통해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불법공개, 무단변조, 훼손, 분실 되지 않도록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무단 사진촬영, 화면 캡쳐, 복사 하지 않도록 한다.**  **4. 업무 수행 중 취득하게 되는 해당 연구관련 자료에 대하여, 업무가 끝나게 되는 즉시 폐기처분하거나 반납한다.**  **5. 대구파티마병원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규정, 정책,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.**  **6. 본 서약서는 서약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지속된다.** |

**개인 건강정보보호 관련 법률**

1. 의료법 제19조(비밀누설 금지)

: 의료인은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의료·조산 또는 간호를 하면서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.

2. 의료법 제21조의 1항(기록 열람 등)

: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는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3. 의료법 제23조의 3항(전자의무기록)

: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·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.

4. 의료법 제87조의 1항(벌칙)

: 제23조 3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
5. 형법 제317조 1항(업무상 비밀누설의 금지)

:의사, 한의사, 치과의사, 약제사, 약종상, 조산사, 변호사, 변리사, 공인회계사, 공증인, 대서업자나 그 직무상 보조자 또는 차등의 직에 있던 자가 그 업무처리 중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.

본인은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에 동의하며, 이를 위반 하였을 경우 관련 법령과 병원의 규정에 따른 처벌을 감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.

년 월 일

신 청 자 (서명)

본원 연구책임자 (서명)

**대구파티마병원장 귀하**